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식품 내 멜라민 함량 최대한도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보건부 장관령(2012년 제034호)

전능하신 신의 가호 아래
인도네시아 공화국 보건부 장관은,

a. 건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의 제조 및 유통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과

b. 식품 내 멜라민 함량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체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과

c. 위의 a및 b에 언급된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보건부 장관이 식품 내 멜라민 사용한도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1.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 3656호를 보완한, 「식품에 관한 1996년의 법 제7호」(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1996년 제99호),

2. 인도네시아 공화국관보 제3821호를 보완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1999년의 법 제8호」(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1999년 제42호),

3.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5063호를 보완한, 「보건에 관한 2009년의 법 제36호」(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2009년 제144호),

4.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4424호 중 「5. 대통령 칙령...” 이하를 보완한, “식품의 안전, 품질 및 영양에 관한 2004년의 행정부 시행령 제28호」(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107호),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5. 「비부처 기관들의 지위, 의무, 기능, 권한, 조직구조 및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2000년의 대통령 칙령 제 103호」를 수 차례 수정을 거쳐 가장 최근에 「2005년의 대통령령제 64호」로 개정한 것,
6. 「중앙행정부처의 지위, 의무 및 기능과 범주 I에 속하는 중앙행정부처의 조직구조, 의무 및 기능에 관한 2010년의 대통령령 제24호」, 그리고
7. 「보건부의 조직 및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보건부 장관령 제 1144/Menkes/Per/VIII/2010호」(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2010년 제585호)를

유념하여,

「식품 내 멜라민 함량 최대한도에 관한 보건부 장관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제 I 장
일반요건

제1조

본 장관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멜라민'이란 질소 함량이 높은 유기화합물로서, 결정체 형태로 얻어지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일반적으로 비식용 제품에 사용되며, 만약 식품에 사용되면 인체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식품'이란 가공 여부에 상관없이 생물학적 공급원 및 물로부터 사람이 섭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품이나 음료를 말하며, 식품 및 음료의 조리, 가공 및/또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첨가제, 식품 원료 및 기타 재료를 포함한다.
3. '최대한도'란 식품 내 최대 오염 농도를 말한다.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란 식품 및 의약품 분야의 통제에 대한 의무 및 책임을 지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제 II 장
식품 내 멜라민 함량 최대한도

제2조

식품 내 멜라민 함량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다:

a. 영유아용 분말형 조제유: 1 mg/kg
b. 영유아용 액상 조제유: 0.15 mg/kg
c. 기타 식품: 2.5 mg/kg

제3조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생산,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은 제2조에서 규정한 멜라민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제2조에 규정한 멜라민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은 법규에서 정하는 오염 식품으로 간주한다.

제 III 장
감독

제5조

(1) 청장은 식품 내 멜라민 최대한도 초과 여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2) 제(1)항에 규정한 감독에 관한 추가 규정은 청장령으로 정한다.

제6조

(1) 제5조에 규정한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청장은 식품 내 멜라민 최대한도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a. 서면 경고
    b. 생산/유통의 일시적 금지
    c. 유통 회수 명령
    d. 폐기명령 및/또는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e. 영업허가의 철회

(2) 식품 내 멜라민 함량 최대한도 위반에 대해서는 위 제(1)항에 언급한 행정제재 외에 법과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형사제재를 추가로 가할 수 있다.

제 IV 장
부칙

제7조

본 장관령은 공고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본 장관령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에 고시한다.

2012년 7월 16일에 자카르타에서 제정되었다.

MENTHE MINISTER OF
REPUHEALTH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AFSIAH MBOI

2012년 8월 15일에
자카르타에서 공포되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인권부 장관,

아미르 시얌수딘(AMIR SYAMSUDIN)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2012년 제840호